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43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이병진・박 정・김한규

윤후덕 • 정성호 • 소병훈

이훈기 • 권향엽 • 노종면

이상식 • 이원택 • 박용갑

김문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 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기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고"를 "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 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의무"를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항만운송 참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단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 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	
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u>할 수 있다</u> .	<u>하여야 한다</u>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②
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	
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	
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u>할 수 있고</u> , 이와 관련	<u>하여야 하고</u>
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 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 전교육에 관한 사항
- 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 보 의무) ① · ② (생 략)

<u><</u>신 설>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 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 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의 승인 이행 확인 및 같은

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 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 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 보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항만운송 참여자는 「산업 안전보건법 | 제2조제2호에 따 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 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 등) -----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u>공개할 수 있</u> <u>다</u>.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 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신 설>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 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